

성명	남인	성명	남인	성명	남인	성명	남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시 모

차 례

- ◎ 고 시
 - 제 227 호 : 육석제 2 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2
 - 제 230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제척승인 2
 - 제 231 호 : 도시계획통치지구지적승인 3
 - 제 234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변경허가 3
- ◎ 공 고
 - 제 212 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틀위 한공람 4
 - 제 219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완료 5
- ◎ 사 령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모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227 호

흑석제 2 구역 주택개량재개발
사업계획 변경결정

1. 건설부고시 제 470 호 (73.12.1) 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 145 호 (74.5.13) 및 서울시고시 제 886 호 (85.12.26) 로 각각 사업실시계획인가 및 사업계획변경 결정된 흑석제 2 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 5 조 제 5 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56 조 6 호 및 제 58 조 제 1 항 3 호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 5 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동작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6. 4. 10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계획 변경결정 조서

- 1) 명 칭 : 흑석 제 2 주택개량 재 개발사업
-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33 번지 일원
- 3) 계획면적 : 111,252.30 제곱미터

4) 변경사유

- 기정 사업계획 결정 도로를 관리 처분계획에 부합토록 조정
- 택지내 녹지의 일부폐지 및 공원으로의 변경
- 시설 명칭의 변경

5) 부문별 계획조서: 별첨 (생략)

나. 변경결정 도면: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30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하고 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6. 4. 11

서울특별시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주체 : 신성주택
대표 2 차주 의 3 인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은명구 불광동 산 39-(18,19)
나. 대지면적 : 2,205 ㎡
다. 용 도 : 연립주택
라. 규 모 : 3 층 2 동 48 세대
마. 건축연면적 : 3,337.56 ㎡
4. 사업시행기간 : 1986 년 4 월 - 10 월
5. 도 면 : 별첨 (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제 231 호</p> <p>도시계획·통치지구 지적승인</p> <p>1. 건설부고시 제 145 호 (84.4.4)로 도시계획 통치지구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통치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같은법 시행령</p> <p>○ 도시계획 통치지구 변경 결정조서</p>		<p>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산동구청 도시경비과 (445-8705) 에 비치하여 도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86. 4. 11</p> <p>서울특별시청</p>	
지구명	위치	면적 (제곱미터)	
광장지구	성동구 광장동	기	변
	530 일대	343,300	316,450
<p>○ 지적승인 도면 : 별첨 도면 도시와 같음 (도면생략)</p> <p>◎ 서울특별시고시제 234 호</p> <p>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변경허가</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462 호 (83.9.7) 로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되고, 동고시 제 790 호 (84.12.27), 동고시 제 774 호 (85.11.13) 로 변경허가된 강남구 역삼동 722 번지 도시계획사업 (시장)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 조 규정과 제 6 조 단항의 위임 규정에</p>		<p>5 조 1 항에 의거 시행변경허가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도시소유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86. 4. 12</p> <p>서울특별시청</p> <p>가. 사업시업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2 번지</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시장) 변경 사업</p> <p>다. 사업의 규모</p>	

단위: 평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해	지 면 적	9,906.9	9,906.9	-	
건	축 면 적	1,512	1,512		
건	축 연 면 적	6,659.4	6,659.4		
유 도	시	3,456	4,452	996	지하 1층 - 지상 2층
	사 무 실, 식 당	3,024	1,512	△ 1,512	지상 3층
	사 설 장 습 소				
	기 계 실	179.4	695.4	516	지하 1층, 옥탑

라. 사업시행자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2번지 영동중앙물산(주) 대표이사 김대환

마. 사업예정기간

- 착수년월일 83. 8.
- 준공예정일 86. 3. 30
- 변경준공 예정일 86.12.30

바. 사공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생략)

사. 토지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 3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212호

주택개발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 한 공 략

1. 전설부고시 제 470호('73.12.1)로

구역 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 145호('74.5.13)로 사업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174호('85.3.16)로 사업계획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 501호('85.7.27)로 시행인 가된 홍은제 5구역 3지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동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사업시행변경 인가 신청이 있기 도시재개발법 제 17조에 의거 이불 공람공고 한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주택과 및 당해조합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으며,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안에 서대문구청 주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1986. 4 10

서울특별시장

가. 공 고 내 용				
1) 사업의 명칭 :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2) 시행변경인가 내용				
위 치	면 적		시 행 제 외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전	변 경 후
서대문구 홍은동 148-94 일 대	82,427 ㎡	82,187 ㎡	APT 15층 16동 1,710 세대 상가 : 5층 1동	APT 15층 17동 1,590 세대 상가 : 4층 1동
3) 정 판 : 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85.8.1 ~ '87.8.31) 5) 공람공고기간 : '86.4.11 ~ '86.5.10 (30일간)			1) 사업의 시행지 : 성동구 광장동 533-1 일대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명칭 : 다니엘학교 시설 확충(직업보도실 및 요육실) 3) 사업의 규모 대지 - 6,790 ㎡ 기존연면적 - 2,942.38 ㎡ 변경연면적 - 2,983.21 ㎡ (증 45.83 ㎡ 대수 211.57 ㎡)	
◎서울특별시공고제 219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완료			4) 사업의 시행자 : 사회부개발공사 협회 대표 이 종 성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착 수 - 85. 10.31 준 공 - 86. 3.31 6) 위치 및 측면도면 : 별첨상락 7) 준 공 도 면 : 별첨상락 8)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성 동구청 도시정비과(445-8705) 로 문의바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66호(80.7.23) 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648(85.9.28)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조 2, 제 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군.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4. 11 서울특별시장				

사 령

◎ 1986년 4월 10일 령제 166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우정옥	지방행정 주사보에 임함.	강서구세무2과	행정 주사보
최병주	행정 주사보에 임함.	강서구시민봉사실	지방행정 주사보

◎ 1986년 4월 14일 령제 167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종철	윤수1과(개인택시면허 업무 심사발요원)과전 근무를명한 ('86.4.14 - 8.13 까지)	성동구	지방행정서기
최재식	"	은평구	"
김문환	"	강서구	지방행정서기
최홍	"	구로구	지방행정서기
전부남	"	영등포구	"
최중민	"	동작구	"

◎ 1986년 4월 11일 령제 168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 장희	지방공무원법 제 63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시립부녀보호소	지방행정 주사보

◎ 1986년 4월 15일 령제 171호

성명	발령부서	원부서	직급
이동수	북부수도관리사업소	세종문화회관	지방행정 주사
허동인	강서구	내무국	"
고성웅	시립부녀보호소	윤수 2과	지방행정 주사보
유영옥	공무원교육원	성동구	"

성명	발령부서	현부서	직급
정철원	올림픽기획담당관	구의수원지사무소	지방행정주사보
김인식	극동지구개발사업소	영등포구	지방행정사기

◎ 1986년 4월 15일

령계 172호

성명	발령부서	현부서	직급
김장열	올림픽기획담당관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보
박원표	올림픽설비담당관	올림픽기획담당관	"
홍정선	전산계산소	성동구	지방행정사기보
한경숙	은평구	전자계산소	"
이미행	중구	중로구	"
주경희	중로구	중로구	"